

# 식자재 공급 계약서

성모성심유치원(이하 "고객사")과 ㈜피시앤시그린(이하 "공급자")은 고객사를 구매자로 하고, ㈜피시앤시그린을 공급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과 방법으로 거래할 것을 합의한다.

## 제1조 (상호협조)

고객사와 공급자는 본 계약을 준수하고 계약품목의 공급 및 거래의 활성화를 통하여 상호 공동이익의 증진을 도모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상호 협조하도록 한다.

## 제2조 (계약품목)

계약품목은 식재료, 잡자재 및 기타 소모품(이하 "식자재")으로 한다.

## 제3조 (계약 기간)

① 본 계약은 2026년 2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4조 (발주)

- ① 고객사는 필요한 식자재를 납품일자를 지정하여 고객사와 공급자는 사용하기로 사전 합의 한 전산시스템 또는 전화를 이용하여 발주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Internet, 문자 등에 갈음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고객사의 납품요청일까지 식자재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 공급자는 이를 고객사에게 통지하고 납품기한을 재협의 할 수 있다.
- ③ 공급자의 납품 확정 시점은 고객사에게 검품 및 검수를 받은 후 거래명세서에 인수 확인을 받은 시점으로 한다.
- ④ 고객사는 납품과 관련하여 공급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이 경우 공급자가 고객사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더라도 고객사는 공급자에게 이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1. 통상적인 시장의 납품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게 하는 행위
  2. 행사의 실시를 목적으로 통상의 납품수량보다 현저히 많은 수량을 납품하게 하는 행위
  3.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계약한 납품 가격을 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정상이격으로 환원하지 아니하거나 환원을 지연하는 행위

## 제5조 (납품)

- ① 공급자는 고객사가 발주한 식자재를 고객사가 요청한 납기기한까지 납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4조 제2항에 따라 공급자가 납품이 불가능함을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공급자는 도매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등급 기준 식자재 중 고객사가 지정하는 등급의 식자재를 공급한다.

## 제6조 (검수)

- ① 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하는 식자재에 대하여 고객사의 검수기준에 따른 검수를 받아야 한다.
- ② 고객사는 식자재의 품질, 규격, 관련법률의 허용기준 등 공급자가 납품하는 식자재에 관한 검수기준을 사전에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
- ③ 고객사는 공급자가 식자재를 납품하면 제2항의 검수기준에 따라 검수를 마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급자가 본 계약에 따라 납품하는 식자재를 지체 없이 수령한다.
  1. 납품 받은 식자재가 공급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훼손된 경우
  2. 납품 받은 식자재에 하자가 있는 경우
  3. 납품 받은 식자재가 고객사가 주문한 식자재와 다른 경우

## 제7조 (식자재의 단가)

고객사가 구입하는 공급자의 식자재의 단가는 매월 2차례 시장시황을 반영한 공급자의 단가표로 확정되며, 품목이 단가표에 미포함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확정하는 것으로 한다.

## 제8조 (대금 결제 및 지급)

- ① 고객사는 공급자로부터 공급받은 식자재에 대하여 매월 말일 기준으로 마감 정산하며 금월 말일까지 공급자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현금 입금하거나, 카드 결제를 할 수 있다.
- ② 공급자는 고객사로부터 통보받은 식자재 대금(공급 금액) 확정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상호 확인 절차를 거쳐 그 차액을 수정하여 당월에 반영할 수 있다.
- ③ 고객사는 공급자에게 공급받은 식자재의 대금을 감액하거나 상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④ 고객사와 공급자의 상호 매입·매출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입금표로써 상계 할 수 있다.

## 제9조 (각종 불이익 제공 금지 등)

고객사는 공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공급자의 식자재를 무상 또는 저가로 취득하거나 요구하는 등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2. 거래관계를 자신만으로 한정하거나 다른 특정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강요 또는 방해하는 행위

3. 공급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식자재의 공급조건이나 판촉행사 조건, 식자재원가 등 경영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권이나 상품을 구입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5.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인지의 쌍방의 영업비밀이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

#### 제10조 (식자재 출고의 정지)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식자재대금 지급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지체하는 경우 공급자가 고객사에게 사전통보 후 식자재의 출고를 중단할 수 있다.

#### 제11조 (소유권 유보)

- ① 식자재대금이 전액 결제될 때까지 식자재의 소유권은 공급자에게 있으며 고객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② 본 계약 제16조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고객사는 공급자의 공급물품 중 대금 미지급분에 해당하는 식자재를 즉시 반환하기로 하며, 본 식자재가 고객사의 창고에 있거나 고객사가 위탁한 제3자의 창고에 있거나를 불문하고 공급자가 이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사유발생 시 고객사는 공급자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도 묻지 아니하며, 고객사의 채권자로부터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강제집행이 취해질 때에는 공급자 소유의 식자재임을 주장하여 강제집행으로부터 공급자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 ④ 소유권 유보로 말미암는 권리는 외상판매로부터 오는 공급자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오직 공급자만 가지며 고객사나 제3자는 주장할 수 없다.

#### 제12조 (위험부담)

공급자가 고객사에게 식자재를 인도한 후 그 식자재가 공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 도난 되었을 경우 그 손해는 소유권 유보에도 불구하고 고객사가 부담한다.

#### 제13조 (손해배상)

고객사 또는 공급자가 본 계약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직·간접의 손해를 끼친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입은 피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 제14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① 당사자 일방에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 상대방은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로 본 계약을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생케 한 당사자는 계약해지로 인하여 그 상대방에게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1.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임의경매, 체납처분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처분을 당하거나 어음·수표 부도(1차 부도를 포함), 해산 사유 발생(합병에 의한 해산은 제외), 청산 절차 개시, 파산신청, 회생신청, 개인회생신청, 부실정후기업 결정, 기업구조조정 절차 개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등이 있거나 우려가 있어, 해당 당사자의 신용이나 지불능력에 중대한 훼손이 있는 경우
  2.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사망, 피성년후견, 피한정후견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당하는 경우
  4. 거래대금을 지급기일로부터 30일 이상 경과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5. 기타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식자재 공급서비스를 수행하기 어려운 원인을 발생케 하여 상대방이 서면으로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②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당시 이미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더라도 이미 성립된 지연이자 및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 제15조 (의무면제)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고객사와 공급자의 상호 간 배상책임은 면제된다.

#### 제16조 (비밀준수)

- ① 고객사와 공급자의 본 계약의 체결과 이행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획득한 업무상의 비밀 또는 식자재의 납품가격 및 조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타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제1항의 의무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 본 계약의 종료 이후에도 유효하며, 양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를 야기한 당사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7조 (권리·의무 양도 금지)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지위 및 본 계약에 의한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기타 방식으로 처분할 수 없다.

#### 제18조 (분쟁의 해결)

- ①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해석상의 이견이나 본 계약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쌍방이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되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 ② 본 계약에 관련된 소송의 관할법원은 고객사의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다만, 고객사와

공급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추가 계약)**

고객사와 공급자의 원활한 거래관계를 위하여 본 계약에 부수하여 고객사와 공급자 간에 추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추가계약은 본 계약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제20조 (효력)**

- ①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적용하기로 한다.
- ② 고객사의 소속 지점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본 계약의 내용이 적용되며, 본 계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본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함과 동시에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고객사와 공급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1부씩 보관하도록 한다.

2026년 2월 1일

고객사      성모성심유치원  
                 밀양시 교동 산24-10  
                 대표 김 연



공급자      ㈜피시앤시그린  
                 밀양시 북성로7길 34-2 4동202호  
                 (신화아파트, 내일동)  
                 대표 민 영 환

